

# 2019년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8. 28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  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용준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안건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5건(안건번호 제2019-101456호~101555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101456호부터 101555호까지 100건의 경우 <기생충>, <어벤저스: 엔드게임>, <원더랜드> 등 최신 영화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.
  
- B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 개봉된 국내 및 국외의 영화에 관한 사안들로서, 그 중에는 예컨대 영화 기생충 (2019),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 (2019), 영화 원더랜드 (2019),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 (2019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  
- C 위원 : 본건 심의대상물은 영상물 등의 복제물로서,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2019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**

**2019. 8. 28.**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임진모

위원 박성호